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376호

의 안 명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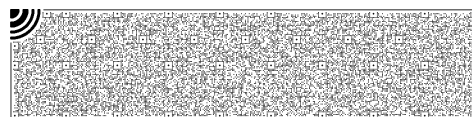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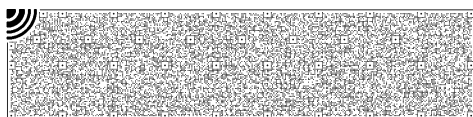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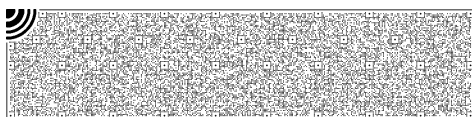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9. 7.

주 문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 지>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

2026. 9.



국민권익위원회



I. 추진 배경	1
II.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6
② 빗공해방지법 적용 조명기구 범위 재정립	9
③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강화	12
IV. 조치사항	14
『붙임 1』 국외 빗공해 규제 제도	15
『붙임 2』 관련 법령	16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 추진배경

- 상업·주거지역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상점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야간 시간대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수면방해, 주거공간 내 빛 유입, 눈부심 등의 생활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

※ **언론보도** 빛공해 고통받는 시민들('25.11월, 이데일리), 잠 못드는 인천의 밤('25.1월, 경기일보), 빛공해 민원 매년 수천건('24.3월, 세계일보) 등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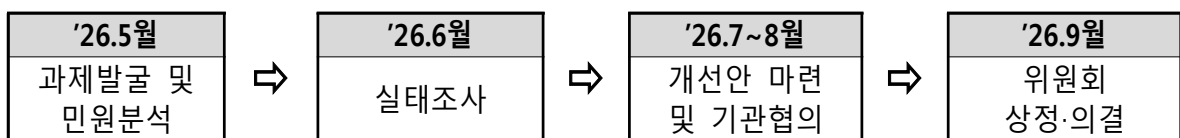
- 정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제정을 통해 '인공조명에 대한 빛 방사(放射) 허용 기준'을 제시하여 옥외광고물 등에 의한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또는 일부 옥외광고물에는 법상 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규제 공백 존재, 민원 발생 시 제재할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단순 계도 후 종결처리 반복

* 광역지방정부에서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해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기초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 의견청취,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재량)

- 이에, 현행 제도상 빛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빛공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다양한 빛공해 요인 중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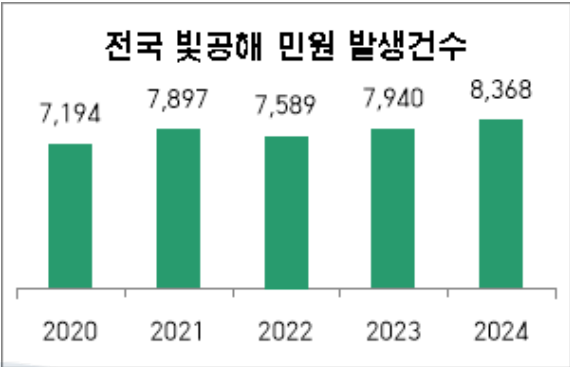


II.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 민원 현황

○ 5년간('20 ~ '24년) 전체 빗공해 관련 민원은 38,988건으로 연평균 약 7,800건 발생

- '22년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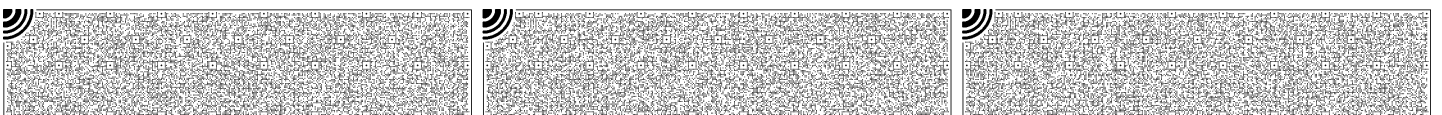


《 광역별 빗공해 민원 발생 현황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7,194	7,897	7,589	7,940	8,368
서울특별시	1,844	1,855	1,454	1,518	1,410
부산광역시	433	713	586	558	548
대구광역시	309	294	345	317	529
인천광역시	323	352	523	354	472
대전광역시	508	393	390	298	368
광주광역시	224	234	311	266	201
울산광역시	73	78	58	86	63
세종특별자치시	14	10	18	23	21
경 기 도	1,386	1,439	1,579	1,631	1,943
강원특별자치도	43	53	53	68	64
충청북도	875	595	649	720	649
충청남도	110	166	123	179	179
전북특별자치도	47	58	82	64	72
전라남도	45	132	66	116	122
경상북도	77	158	73	63	208
경상남도	507	1,260	1,140	1,181	1,128
제주특별자치도	376	107	139	498	391

※ 옥외광고물로 인한 빗공해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빗공해 관련 민원 합산



□ 빛공해방지법령 주요 내용

○ (개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 및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자, '13년 빛공해방지법 제정·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빛공해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조명기구의 범위 및 빛방사 허용기준 제시

* 2023.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 발표

○ (허용기준) 빛방사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등은 아래 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허용기준의 초과정도(1~1.5배 / 1.5~2배 / 2배 이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다만, 빛방사 허용기준은 ❶ 빛공해방지법이 적용되는 조명기구에 한하여, ❷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지역에서만 적용

< 빛방사 허용기준 > (빛공해방지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별표1)

□ 광고조명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lx (lm/m ²)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 ²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 전광류 광고물: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 ²

○ **(적용 조명기구)** 빛방사방지법령 적용 조명기구는 크게 ①공간 조명, ②광고조명, ③장식조명으로 분류

- 이 중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과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만 **한정**하여 적용

- 이에 기후부는 신고대상 또는 허가·신고 비대상 옥외광고물 등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이하 ‘광고조명 권고기준 고시’) 마련

※ 가이드라인(’18년~)과 권고기준(’14년~)은 내용이 유사하고 강제성 없는 참고용임

참고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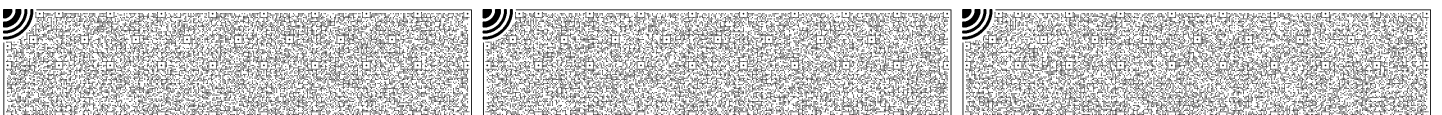
5. 광고조명 설치 가이드라인

5.2. 광고조명 설치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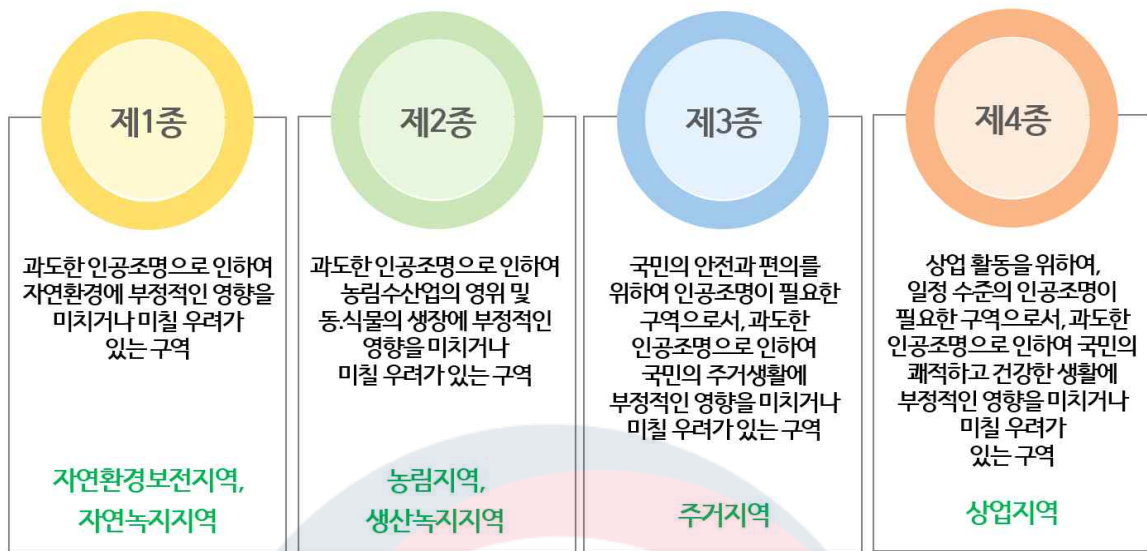
- 가. 광고조명의 설치 시 지역특성, 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지역이나 타 건축물 등에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지양한다.
- 나. 자체발광형 조명방식의 사용은 지양한다.
- 다. 광고물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높이, 조명기구와 주거지 사이의 거리, 빛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글레어, 산란광, 침입광을 유발하지 않을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 라. 광고조명의 조사대상과 조사각도를 분명히 정하여 목표물 밖으로 빛이 누출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 마. 외조형 조명방식에서는 상향 조사를 금하고, 광고물의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향으로 광고물을 조명해야 하며, 광원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에 직접 보여서는 안 된다.
- 바. 내조형 및 채널레터형 조명방식에 있어서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의 밝은 색상의 사용을 지양하고, 조명기구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사용을 권장한다.
- 사. 환경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는 누출광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거나 차광판을 설치한다.
- 아. 필요 이상의 조명에 의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고효율 광원의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약한다.

6.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 ① **(소등시간)** 조명은 시설 이용 및 영업시간 종료 시 또는 자정(00시) 이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정 이후에도 이용하는 시설의 조명은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소등한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광역지방정부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지역을 구분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지정·관리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❶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 ❷ **기초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 의견 청취** → ❸ **빛공해방지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광역지방정부는 인공조명이 자연 및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이용 등 지역환경 현황 등을 3년 마다 1회 이상 평가(보통 외부용역기관이 수행)

< 관련 규정 >

■ **빛공해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현 황

○ 현재 16개 광역지방정부 중 조명환경관리구역 미지정률은 18.8%(3개)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12개 광역지방정부 중 4개는 관할 시·군·구 중에 일부 지역만을 선별하여 지정

※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는 약 69%(15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좋은빛정보센터 누리집]

구분	지정여부	지정 범위		지정일
		지정 내역	시·군·구 지정 비율	
서울특별시	지정	전 지역	100%	'15. 7. 30.
부산광역시	지정	전 지역	100%	'20. 7. 15.
대구광역시	지정	전 지역	100%	'21. 1. 1.
인천광역시	지정	강화군, 옹진군 제외	80%	'17. 12. 18.
대전광역시	지정	전 지역	100%	'21. 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	통합 전 전라남도 지역 제외	18.5%	'16. 9. 15.
울산광역시	지정	미포온산 산업단지 제외	60%	'21. 12. 3.
세종특별자치시	미지정	-	-	-
경 기 도	지정	전 지역	100%	'18. 7. 19.
강원특별자치도	미지정	-	-	-
충청북도	지정	전 지역	100%	'21. 12. 24.
충청남도	지정	전 지역	100%	'23. 9. 1.
전북특별자치도	미지정	-	-	-
경상북도	지정	전 지역	100%	'26. 7. 6.
경상남도	지정	군 지역 제외	44%	'22. 12. 1.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전 지역	100%	'23. 1. 1.

* 통합('26.7.1.) 전 광주 전 지역이 지정되어 있던 반면, 전남 지역은 전체 미지정

- 미지정 광역지방정부(3개)의 경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광고조명이 평균 약 53.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 평가용역 수행기관이 표준지(대표지역)를 선정하고, 인근 지역 포함 광고 조명 등의 조도(빛의 밝기) 및 휘도(시각적 체감) 측정

- 해당 광역지방정부는 관할 시·군·구 의견 조회 결과 여전히 지정 반대의견*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

* (사유) 소상공인의 피해가중, 저개발지역에 대한 상대적 특수성, 실제 민원 발생 저조 등

《 광고조명 빛방사 허용기준 측정결과 》

[출처: 각 광역지방정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구성]

구분	광고조명			평가연도
	측정개소	초과개소	초과율(%)	
합 계	2,474	1,319	53.3	-
세종특별자치시	1,484	877	59.1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319	153	48.0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671	289	43.1	2025년

문 제 점

- 광역지방정부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종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 3개 광역지방정부의 경우 관할 시·군·구 전역에 대해 단 한 곳도 지정하고 있지 않아,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불가

※ 인천 및 경남의 경우 군 지역을 제외, 울산의 경우 일부 산업단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하고 있음



- 결국, 옥외광고물 등 빛공해 민원이 제기되어도,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은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단순 계도로만 행정처리

민원사례



국민신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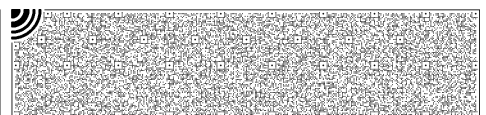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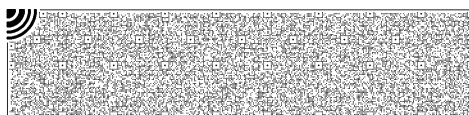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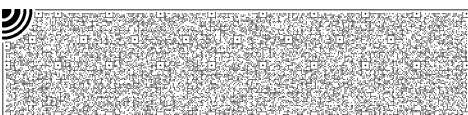
조명환경관리구역 미지정 관련 지방정부 답변 내용

- **(강원 ○○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민원내용 전달 및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빛공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빛공해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1. 23.)
- **(경북 ○○시)** 빛공해의 경우 야간 점등 시 불필요한 조명기구를 소등하는 등 빛공해 저감조치 방법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빛방사 허용기준 적합 이행 의무가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5. 3. 26.) ※ 경북도의 경우 최근('26.7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전북 ○○시)** 현재 도내 모든 시·군·구는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귀하의 생활 불편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26. 4. 28.)

개선방안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광고조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선별하여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 확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통합 전 전남 지역 전체가 미지정되어 있었던바, 전남 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 (지정효과) 지정 시 기준 초과 조명에 대해 시설개선 의무가 부과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 유예(빛공해방지법 제12조제2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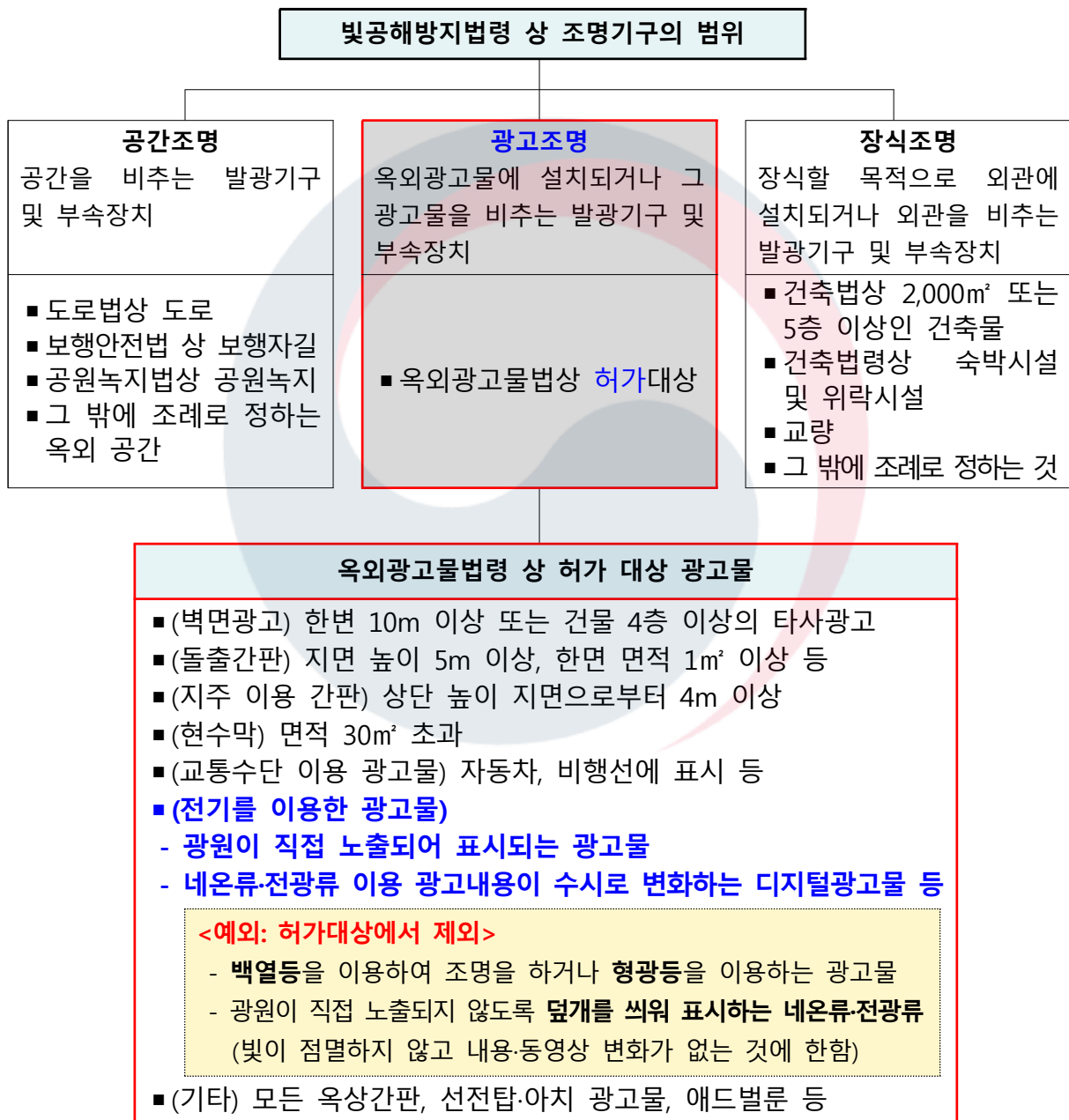
⇒ **해당 광역지방정부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제정**



2 빛공해방지법 적용 조명기구 범위 재정립

현 황

- 빛공해방지법 적용 조명기구 중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 대상과 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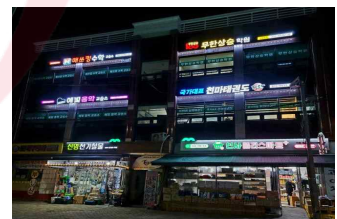
※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대상이거나 신고조차 필요없는 경우임

문 제 점

-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 대상 여부는 표시 및 설치 관리 경중에 따른 구분으로, 빛 발생 여부와 직접적으로는 무관
 - 광고조명에 의해 나타나는 빛공해 피해 유형은 글레어* 등 조명 방식과 빛의 밝기에 기인한 것으로, 빛을 발한다면 관계 법령 상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빛공해 관리가 필요
 - * (Glare) 조명방향으로 사물을 직접 바라보는 경우 조명기구의 밝음 정도에 따라 시지각적 장애현상을 일으키는 빛의 현상
- 한편, 전기를 사용하여 빛을 발하는 광고물임에도 네온류·전광류*가 아닌 경우(예: 백열등, 형광등),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한 디지털광고물이라도 광고에 변화가 없고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 *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중 네온류·전광류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이므로, 빛공해방지법상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

[사례]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옥외광고물(백열등·형광등 및 비노출 네온류·전광류)

- ① 한 변의 길이 10m 미만인 **벽면광고** 중에
 - 건물 **모든 층의 자사**광고
 - ☞ 4층 이상은 신고 대상, 3층 이하는 신고 대상도 아니므로 허용
 - 건물 **3층 이하의 타사** 광고
 - ☞ 3층 이하는 신고 대상도 아니므로 허용
- ② **돌출간판** 중에 (※ 의료기관·약국·미용업소 등 제외)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
 - ☞ 1㎡ 미만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 ☞ 5m 미만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③ 비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예) '신고대상인 현수막'을 비추는 조명장치는 빛밝기와 무관하게 허용됨
- ④ 그 밖에 빛을 사용하나 신고 및 비신고 대상인 광고물



- 또한, '허가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에 '비추는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빔방사 허용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

민원사례



국민신문고

미적용 조명기구 관련 지방정부 답변 내용

- (전북 ○○시) 본건의 벽면이용간판은 5m² 이하의 옥외광고물로서 신고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관련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4. 2. 14.)
- (경기 ○○시) 사업주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22시 이후에는 소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빔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의 경우 강제로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4. 10.)

개선방안

-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대상에 국한된 현행 빔공해방지법상 **광고조명의 범위를 발광 수준 및 빔공해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립**

※ 필요 시 빔공해방지법 적용 대상 조명기구의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예시) 빔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빔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좌동) 2. 전기를 이용하여 발광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명기구. 다만,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나. (생략)

⇒ 빔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강화

현 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해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실시

※ 각 기초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법정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

< 관련 규정 >

■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교육과정은 연간 1,000여 명이 수료

《 최근 3년간 신규종사자 교육 수료 현황 》

[출처: 한국옥외광고센터, 단위: 명, %]

연도	수강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2025년	1,028	989	96.2
2024년	1,035	1,003	96.9
2023년	1,052	998	94.9

문 제 점

- 옥외광고업계 종사자에 대한 빗공해 교육이 선행되고, 광고물 제작 단계에서 빗방사 허용기준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행 신규종사자 교육과정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빗공해 방지 및 빗방사 허용기준 관련 내용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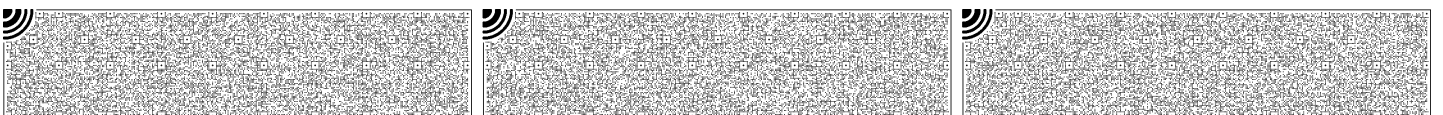
《 (현행) 사이버아카데미 신규종사자 과정 내용 》

[출처: 한국옥외광고센터 제공]

순번	강의 주제	상세내용	시간
1	옥외광고물 법령 및 표시 방법(6강)	옥외광고물 개념	3H
		최근 법령 개정사항, 총칙, 허가 및 신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1)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2)	
		광고물 금지 또한 제한, 특정구역, 공공목적 광고물 등, 적용배제 광고물 등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 옥외광고사업 등록 및 교육	
2	옥외광고물 안전표준	옥외광고물 안전표준안 소개	1.5H
		옥외광고물 제작일반	
		옥외광고물 설치일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일반	
3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의 이해	0.8H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의 적용	
4	간판디자인 실무가이드	간판디자인 업무의 이해	0.7H
합 계 (13강)			6H

개선방안

- 옥외광고물 교육과정에 빗공해 방지 관련 내용 등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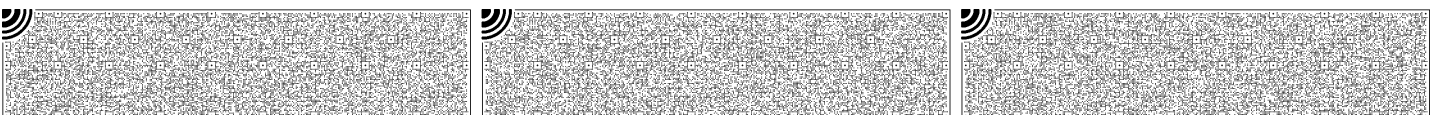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광역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①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 확대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 확대 ☞ 해당 광역지방정부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제정	3개 광역지방정부 (세종, 강원, 전북)
② 빛공해방지법 적용 조명기구 범위 재정립	○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대상에 국한된 현행 빛공해방지법상 광고조명의 범위를 발광 수준 및 빛공해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립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③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강화	○ 옥외광고물 교육과정에 빛공해 방지 관련 내용 및 빛방사 허용기준 등 반영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한국옥외광 고센터)

□ 조치기한 : 2027. 9월



붙임 1

국외 빛공해 규제 제도

[출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3.12.)]

방식	국가	특징											
직접 규제	프랑스	◦ 조명 사용 유형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도, 휘도, 조명 효율 등 규정, 위반할 경우 광원의 작동 중지 및 벌금 부과 (최대 750유로)											
	미국	◦ 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단계화된 영역을 설정하고, 주별로 영역별 허용 조도, 조명시설 설치기준, 광고 조명 규제 등 적용											
		<table><tr><th>주</th><th>특징</th></tr><tr><td>뉴멕시코</td><td>◦ 건축조명, 주차조명, 광고를 목적으로 한 조명 등을 규제</td></tr><tr><td>미시간</td><td>◦ 허드슨 호수 지역, 원더니주립공원 등 특정지구를 밤하늘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자율 준수 유도 ◦ 밤하늘 보호지구 내 모든 옥외조명은 아래쪽을 향해야 함</td></tr><tr><td>애리조나</td><td>◦ 미국 내 최초로 빛공해방지법 제정 및 자율 준수 유도 ◦ 백열전구 150W, 이외 광원 70W 이상의 옥외조명은 전등갓 설치 등 빛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차단 하도록 규제</td></tr><tr><td>캘리포니아</td><td>◦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어두운 환경(국립공원), 낮은 휘도 지역(교외지역), 중간 휘도 지역(도시지역), 높은 휘도 지역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옥외 조명 설치 시 조도, 조명 시간 등을 제한 ◦ 조명갓 설치방법, 사용 램프 규정 등 기술적 측면 규정 및 에너지 저감대책 규제</td></tr></table>		주	특징	뉴멕시코	◦ 건축조명, 주차조명, 광고를 목적으로 한 조명 등을 규제	미시간	◦ 허드슨 호수 지역, 원더니주립공원 등 특정지구를 밤하늘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자율 준수 유도 ◦ 밤하늘 보호지구 내 모든 옥외조명은 아래쪽을 향해야 함	애리조나	◦ 미국 내 최초로 빛공해방지법 제정 및 자율 준수 유도 ◦ 백열전구 150W, 이외 광원 70W 이상의 옥외조명은 전등갓 설치 등 빛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차단 하도록 규제	캘리포니아	◦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어두운 환경(국립공원), 낮은 휘도 지역(교외지역), 중간 휘도 지역(도시지역), 높은 휘도 지역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옥외 조명 설치 시 조도, 조명 시간 등을 제한 ◦ 조명갓 설치방법, 사용 램프 규정 등 기술적 측면 규정 및 에너지 저감대책 규제
		주	특징										
뉴멕시코		◦ 건축조명, 주차조명, 광고를 목적으로 한 조명 등을 규제											
미시간	◦ 허드슨 호수 지역, 원더니주립공원 등 특정지구를 밤하늘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자율 준수 유도 ◦ 밤하늘 보호지구 내 모든 옥외조명은 아래쪽을 향해야 함												
애리조나	◦ 미국 내 최초로 빛공해방지법 제정 및 자율 준수 유도 ◦ 백열전구 150W, 이외 광원 70W 이상의 옥외조명은 전등갓 설치 등 빛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차단 하도록 규제												
캘리포니아	◦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어두운 환경(국립공원), 낮은 휘도 지역(교외지역), 중간 휘도 지역(도시지역), 높은 휘도 지역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옥외 조명 설치 시 조도, 조명 시간 등을 제한 ◦ 조명갓 설치방법, 사용 램프 규정 등 기술적 측면 규정 및 에너지 저감대책 규제												
스페인	◦ 주별 조례를 통해 관리하며, 일부 주의 경우 해변·해안 및 생태계 보전지역, 천문학지역 조명기구 설치 금지(안전 및 긴급사항 제외)												
간접 규제	일본	◦ ‘광해대책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조명 설치 체크리스트 마련, 조명설치검사 목록 마련 등 사전 예방을 중점으로 빛공해 방지 유도											
	그리스	◦ 보호종 서식 지역 등 자연보호구역의 경우 조명 교체·완충 구역 조성을 통해 빛공해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유도											

붙임 2

관련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소유자들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착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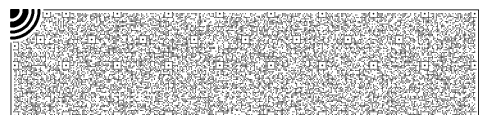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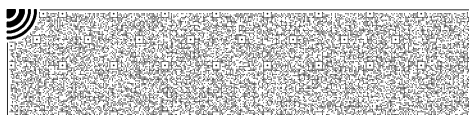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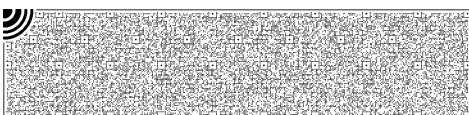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1호			
1)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30	50	100
2)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60	100	200
3)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90	150	30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② ~ ⑩ (생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마. 대여자전거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로그래프,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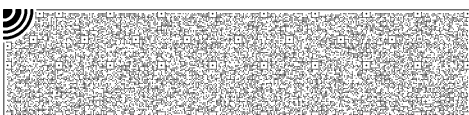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겹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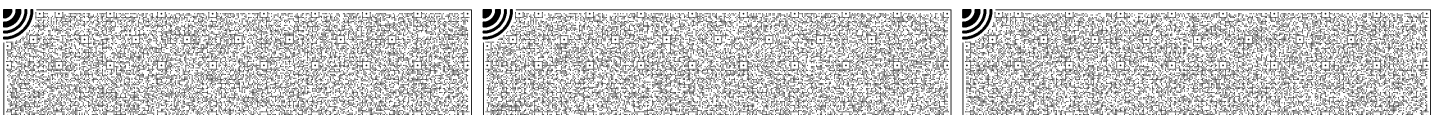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9월 7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홍 주

위 원 김 바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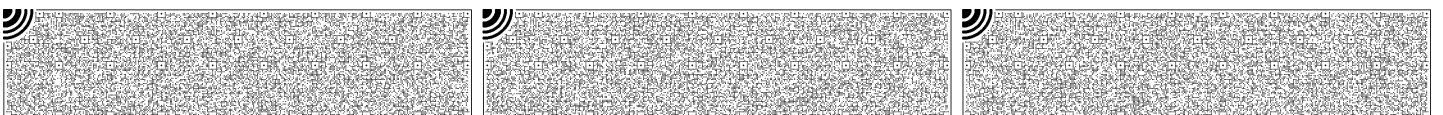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정 본 입 니 다 .

2026. 9. 7.

국 민 권 의 위 원

